

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

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
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
변화와 도전을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.

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
☐ 분야별 채용인원

채용직렬	채용분야		채용인원	비고
기획경영직	기획행정	일반	4	채용형 인턴 으로 선발
		장애	1	
	경영회계	일반	4	
		장애	1	
	소계		10	
국토정보직	지적측량	일반	56	
		장애	5	
		보훈	5	
	공간정보	일반	4	
		장애	1	
	국토조사	일반	8	
		장애	2	
	소계		81	
무기계약직	경영회계	일반	3	무기계약직 으로 선발
		장애	2	
		소계	5	
	지적측량	일반	25	
		장애	5	
		소계	30	
합 계			126	

*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

**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은 하단 참조

□ 고용형태 및 근무지

○ (고용형태)

- 정규직(기획경영직/국토정보직): 약 4개월 간 채용형 인턴(4주간 연수교육 포함)을 거친 후 업무수행능력, 근무자세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(7급)으로 임용
- 무기계약직: 3개월 간 수습기간(1~2주간 연수교육 포함) 후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양호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임용

○ (근무지) 본사 및 부설기관, 지역본부 및 지사(전국)

□ 지원 자격 안내

- (블라인드 채용) 학력, 전공, 성별, 연령, 어학성적 제한 없음.
 - 단, 공사 정년(만 60세) 이상자 제외
- (근무기준) 2018년 12월 임용일 이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
- (결격사유)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,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6. 공사에서 퇴직한 자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다만, 본인의 원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렬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7. 공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(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)

- (중복지원) 채용직렬 및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지원 불가
- (병역)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 - 단, 군 복무 중인 경우, 채용후보자 등록 마감일(2018.12.13.) 전에 전역한 자로 교육입소 및 인턴기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

□ 채용분야별 응시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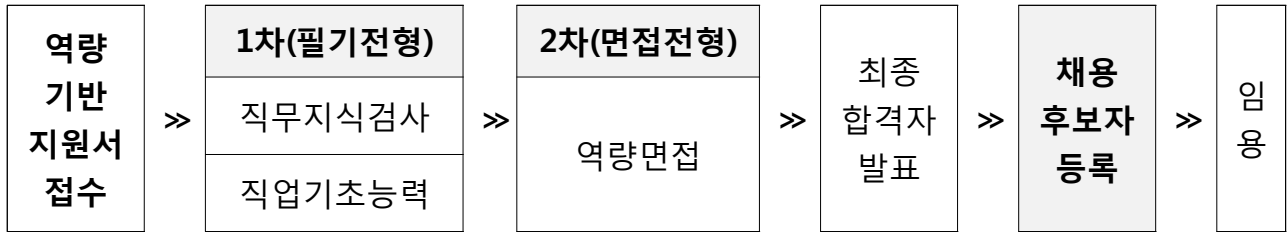
채용분야			자격 요건(모두 충족)
기획 경영	기획 · 경영 · 회계	일반	• 없음
		장애	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, 「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국토 정보	지적 측량	일반	• 지적 자격 보유자
		보훈	• 지적 자격 보유자 • 국가보훈처 추천자
		장애	• 지적 자격 보유자 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, 「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•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	공간 정보 · 국토 조사	일반	• 없음
		장애	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, 「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무기 계약	경영 회계	일반	• 없음
		장애	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, 「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	지적 측량	일반	• 지적 자격 보유자
		장애	• 지적 자격 보유자 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, 「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•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
※ 지적자격 : 지적기술사, 지적기사, 지적산업기사, 지적기능사 중 1개 이상 보유

※ 자격증 기준일: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(자격번호)가 부여된
자격증에 한하여 인정

2. 전형방법 및 절차

□ 직무능력중심 선발절차



□ 전형별 배점기준

역량기반 지원서	1차(필기전형)		2차(면접전형)	최종합격자 결정
적격/ 부적격	직무지식검사 (70%)	[직업기초능력]	역량면접(100%)	1차(60%) + 2차(40%) 합산
		직업성격검사 (적격/부적격)		
		직무능력검사 (30%)		

□ 전형별 안내

【역량기반지원서】

-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, 자격,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작성하는 NCS 기반 직무역량 중심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- 인적사항(생년월일, 연령, 성별, 가족관계, 출신지역), 학교명, 전공, 학점, 어학성적 기재란 없음.
- 합격자 결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면접자료 등으로 활용
다만, 부적격 지원서의 경우 1차 시험 응시(수험표 출력) 불가
-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
 -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.

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첨부파일 미첨부시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며, 접수된 후에도 검토결과가 부적격*으로 판정될 경우 1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
- * **부적격 사례:** 자격증 파일 첨부 항목에 다른 파일 첨부, 지원서 자격증 항목에 입력한 자격증 정보와 파일에 첨부한 내용 불일치, 자기소개서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입력, 자기소개서 최소작성 분량(문항당 400자)에 미달하는 경우
- 지원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
-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 불가

【직무지식검사】

- 계산기 사용 기준
 - (기획경영) 단순 계산 기능 소형전자계산기 사용 가능
 - (국토정보) 일반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
 - *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자 본인이 감독자 앞에서 프로그램을 리셋한 후 사용
- 채용분야별 직무지식검사 내용 안내
 - (출제유형) 객관식(기획경영/국토정보 60문항, 무기계약 50문항)
 - (공통과목) 기초통계학
 - (관계법규 I)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, 「지적재조사특별법」
 - (관계법규 II)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」, 「국토기본법」,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
 - * 관계법규는 해당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을 포함하며, 채용공고일 기준 **현행법**으로 함.
 - (기초통계학) 범위와 난이도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(기초통계학 예제문제)에 공지된 예시문제 참조

※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내용

시험구분	채용분야		시험내용(문항수)	시험시간
직업기초 능력평가	공 통		직업성격검사(150)	20분
			직무능력검사(60) (직무별 4개 영역)	60분
직무 지식검사	기획경영	기획행정	행정학(20), 경제학(20), 기초통계학(20)	70분
		경영회계	경영학(20), 회계학(20), 기초통계학(20)	
	국토정보	지적측량	지적학(15), 지적측량(20), 관계법규 I (15), 기초통계학(10)	
		공간정보	공간정보학(20), 관계법규Ⅱ(20) 기초통계학(20)	
		국토조사	도시계획학(20), 관계법규Ⅱ(20) 기초통계학(20)	
	무기계약	경영회계	회계원리(50)	
		지적측량	지적측량(30), 관계법규 I (20)	
	합 계			150분

【직업기초능력평가】

- 계산기 사용 불가
- (직업성격검사)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마인드 측정
 - 점수 미반영, 적합여부만 결정
- (직무능력검사) 직무별 NCS 직업기초능력 4개 분야
 - (기획행정/경영회계) 의사소통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조직이해능력
 - (지적측량/공간정보/국토조사) 수리, 문제해결, 정보, 기술능력

【역량면접】

- 경험면접, 상황면접 등으로 공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검증
- 면접대상 인원: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(지적측량은 1.5배수)

3. 입사지원서 접수

□ 접수기간 : 2018. 10. 11.(목) 13:00 ~ 2018. 10. 18.(목) 17:00

□ 접수방법 :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www.lx.or.kr)

- 지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일 전에 접수하시길 바라며, 지원서 작성방법은 접수화면의 '작성요령' 참조

□ 입사지원시 제출서류(파일 첨부)

- [지적측량분야] 지적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(한국산업인력공단)

- 큐넷(www.q-net.or.kr)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가능

- [해당자] 공무원(지적업무) 경력증명서

* 각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

4. 채용일정

구 분	일 자	비 고
지원서 접수	10. 11.(목) ~ 10. 18.(목)	온라인 접수
필기시험 안내	10. 26.(금)	지원서 적격여부, 필기시험 장소/시간 공지
필기시험	11. 3.(토)	전주 소재 학교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	11. 15.(목)	홈페이지, 지원서 접수사이트
역량면접	11. 28.(수) ~ 11. 30.(금)	서울
최종합격자 발표	12. 6.(목)	홈페이지
채용후보자 등록	12. 6.(목) ~ 12. 13.(목)	

*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
5. 채용 우대사항

○ 채용우대제도 적용방법

- 채용우대제도는 합격자 중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, 단 공사가 정한 채용합격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

(1)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%

- (적용대상) 채용공고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채용분야
- (적용방법)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 결정시 어느 한 성의 합격인원 비율이 20%에 미달하는 경우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 하한 성적(합격선 -3점)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
※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

(2) 이전 지역(전북)인재 채용목표제 20%

- 전북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시행

*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2

- (이전지역인재 개념)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“이전지역 학교”라 함)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

우리 공사 응시자는 전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(대학원 제외)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8학기), 2년(4학기)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.

※ 전라북도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.

- (적용대상분야) 정규직 신규채용 중 선발예정인원이 채용분야별 연 인원 5명을 초과하는 경우
 - ※ 채용분야별 연 인원은 '18년 기재용공고분 반영하여 적용대상여부 판단
 - ※ 기획경영(경영회계), 국토정보(지적측량/공간정보/국토조사) 일반분야 적용
- (적용방법) 각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20%에 미달하는 경우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 채용합격 하한선 (합격선 -5점) 이상인 이전지역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
 - ※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.
 - ※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(2018.01.25.) 적용

6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 또는 작성서류에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무효처리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-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신분확인용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 미지참시 퇴실 조치하여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(※ 인정되는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)
-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자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- 제한경쟁분야(보훈 및 장애) 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될 경우 해당분야 일반부문에서 추가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채용형 인턴(무기계약직)으로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(임용 후 교육원 미입교 포함)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

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합격 후 근무지 배치는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단위로 배치되며, **지적측량분야 신입사원은 정규직으로 임용 후 3년 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가 제한됩니다.**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안에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팩스 (063-906-5249) 또는 이메일(lx0202@lx.or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(다만, 이메일 제출한 경우,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)
- 공고 내용은 공사 업무 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

2018. 10. 2.



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 가산점 안내

○ 적용방법

- 가산점은 직무지식검사 만점의 %로 가산되며, 과락(40% 미만)인 경우 가산점 미적용
- 취업지원가점, 자격가점, 경력가점은 각각 합산
- 취업지원대상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각 시험별 만점의 %로 가산

구 분		가 산 점 수	비 고
취업지원 가점 [붙임2 참조]	○ 취업지원대상자	10% 5%	
	○ 기초생활수급자 ○ 차상위계층	5%	
자격가점	○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, 도시계획기사, 토목기사, 정보처리기사, ○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 무사, 한국사능력1급	2%	- 자격 가점은 보유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- 최대 4%까지 인정 (예시. 정보처리기사 와 정보처리기능사 보유시 자격가점은 2%로 적용됨)
	○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,정보처리산업 기사, ○ 전산회계운용사 1급, 한국사능력2급	1.5%	
	○ 측량기능사,전산응용토목제 도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 ○ 전산회계운용사 2급, 한국사능력3급	1%	
경력가점	○ 한국국토정보공사, 공무원(지적업무) 경력 - 2년 이상 - 1년 이상 - 9월 이상 1년 미만 - 5월 이상 9월 미만 - 3월 이상 5월 미만	5% 3% 2% 1% 0.5%	

취업지원가점 가산점수 적용 비율 안내

대 상 별	10% 가점	5% 가점
독립유공자	· 애국지사 본인 · 순국선열 유족 ·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	· 애국지사 가족 ·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·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
국가유공자	· 국가유공자 본인 ·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	· 국가유공자의 가족 ·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·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
5·18민주유공자	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·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
특수임무수행자	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 본인 ·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
고엽제후유의증	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	·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
저소득층		·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